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 안 번호	467
-----------	-----

제안년월일: 2024. 11. .

제 안 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1. 주 문

2024년 11월 30일로 종료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03.31.까지 연장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는 자료 요구, 관계 증인 출석 요구, 업무보고,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여 왔으나, 추가 조사활동 필요와 미결정된 논의 사항(과태료 등), 결과보고서 채택 등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당초: 2022. 12. 19. ~ 2024. 11. 30.(필요시 연장)

→ 변경: 2022.12.19. ~ 2025.03.31.

의안 번호	468
----------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

2024. 1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

1 조사 목적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금융특구·의료특구 사업, 메낙골 지구단위(안) 사업에 관한 추진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2 조사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행정사무조사)

3 조사 기간(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는 자료 요구 및 관계 증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여 왔으나, 추가 조사활동 필요와 미결정된 논의 사항(과태료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함.

- 당초 : 2022.12.19. ~ 2024.11.30.(필요시 연장)

- 변경 : 2022.12.19. ~ 2025.03.31.

4 조사 대상 및 범위

- 대 상: 영등포구청
- 범 위(조사 사무)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 금융특구·의료특구 사업
 - 메낙골 지구단위(안) 사업

5 조사 방법

- 조사대상 사업의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청취
- 관련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조사
- 조사대상 기관 관계인 증인·참고인 채택 조사

6 조사위원회 구성

- 구성일: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2.12.13.)
- 위원수: 총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24.11.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사무보조
		성 명	소관상임위	
신흥식	※ 2023.5.3. 부위원장 사임	김지연	행정위원회	○ 전문위원실 ○ 의사팀 ○ 정책지원팀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전승관	사회건설 위원회	
		차인영		

7

추진실적 및 계획(변경)

차 수	일 시	활동 내용	비고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12.13.	○ 행정사무조사 발의 ○ 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장 제의)	
제1차	2022.12.19.	○ 위원장 선임: 신흥식 의원 ○ 부위원장 선임: 박현우 의원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수정안 의결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12.21.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수정안 의결	
제2차	2023.02.06.	○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결	
제3차	2023.02.17.	○ 업무보고 요구의 건 의결	
제4차	2023.02.24.	○ 업무보고 ○ 업무보고 요구의 건 의결	
제5차	2023.03.17.	○ 업무보고(계속) ○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의결	
제6차	2023.04.12.	○ 증인 등 출석	
제7차	2023.04.21.	○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의결	
제8차	2023.05.03.	○ 부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증인 등의 회의 비공개 요청에 대한 결정의 건 의결 ○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제9차	2023.06.22.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06.27.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제10차	2023.11.27.	○ 현장 방문	
제11차	2023.12.18.	○ 업무보고의 건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12.21.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제12차	2024.05.13.	○ 업무보고의 건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024년 제252회 임사회	2024.05.17.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제13차	2024.11.18.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제13차 회의 이후	20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료 추가 요구 ○ 기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업무 ○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위원회 채택 ○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	----------	---	--

8

소요경비

- 조사위원회 활동경비, 전문인력 지원경비, 증인 등의 지급비용 등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름.

- 붙임 1. 제출요구서 서식 1부
 2. 결과의견서 서식 1부
 3. 선서문 서식 1부. 끝.

(붙임 1)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의원 (서명 또는 인)

연 번	요구서류(자료)	비고

(붙임 2)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견서

()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사결과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의원 (서명 또는 인)

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지정요구, 처리요구 건의, 기타)

(붙임 3)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 . . .

소 속:

직 위:

선서인: (인)